

감 사 보 고 서

사단법인

해냄복지회

이사회 귀중

본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사단법인 해냄복지회에 대한 2014. 1. 1 ~ 2014. 12. 31 회계 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본 감사는 업무감사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기타 중요한 관련 회의 출석, 업무에 관한 일체의 서류열람 그리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.

사업 감사의 결과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원 및 관리 등에

의하여 매수금에 해당하는 것은 보여지며,

업무 감사의 결과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예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따라서 본 감사는 사단법인 해냄복지회의 업무(2014. 1. 1 ~ 2014. 12. 31)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.

2015년 2월 2일

감사 김영우 김민

감 사 보 고 서

사단법인

해냄복지회

이사회 귀중

본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사단법인 해냄복지회에 대한 2014. 1. 1 ~ 2014. 12. 31 회계 연도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본 감사는 회계장부열람과 증빙서류 실사 등 기타 필요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감사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기타 중요한 관련 회의 출석, 관련 일체의 서류열람 그리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.

회계 감사의 결과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으며, 2014년 예산 및 2015년 예산을 검토한 결과
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,
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는 예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따라서 본 감사는 사단법인 해냄복지회의 회계(2014. 1. 1 ~ 2014. 12. 31)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.

2015년 2월 2일

감사

김성인